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63
----------	-------

발의연월일 : 2026. 3. 18.

발 의 자 : 임종득 · 김예지 · 서천호
김승수 · 김성원 · 김상훈
이양수 · 성일종 · 박형수
강선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이 중요 요소로 반영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사회기반시설의 미확충으로 인해 인구 감소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이 높을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 보장에 한계가 있을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

가의 재정 규모가 7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완화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 반영비율을 제한하여 사회적 가치 등 경제성 외의 지표를 보다 많이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등).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출 규모가 7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기술성·사회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반영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1. ~ 4.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⑥ (생략)

으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기술성·사회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반영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